인용과 표절

지식재산연구원 특강

2014. 6. 30.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문의 정직성 3대 원칙

Charles Lipson

1.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연구 실적은 실제로 자신이 연구한 것이어야 한다.

2. 다른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인용하거나 참고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지 학술 용어를 인용한 것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3. 연구 자료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구 실적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

표절과 저작권침해

- **표절(剽竊, Plagiarism)의 정의**
  - 저작권침해(무단이용) + “타인의 저작물/독특한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양 발표” (윤리적 비난 가능성 추가)
  - Passing off
- **저작권침해와의 차이**
  - 표절 : 저작권보호대상 무관(Idea, 보호기간만료)
  - 침해 : 속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출처표시 했어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음)
  - 피해자론 : 피표절자의 동의가 면책 근거되나?

표절 정의

모델지침(안) 1. [표절의 정의와 유형]

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표절에는 “전형적 표절”과 “비전형적 표절”이 있다.

나. 전형적 표절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비전형적 표절

“전형적 표절”이 아닌 경우로서 표절로 보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2) 자기표절
(3) 중복게재
(4) 부당한 저자 표시

인용의 목적

- **인용의 목적**
  - 권위의 원천 (인간의 불완전성)
  - 검증 path 확보
  - 지속적인 연구에 도움(부산물) :
    참고문헌의 중요성 / 통섭
    Warren & Brandeis

-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폐해**
  - 각주 없는 사회
  - reverse confusion / passing off / mal-practice / 입법오류

저작권법의 목적과 근거

- **저작권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 v. 저격용 실탄
    "저작권, 요격용 미사일?"
  - 몇 가지 사례

- **저작권법상의 근거**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저작권법상 근거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
- 정당한 범위 내 – 주종관계의 형성
  양적 주종관계
  질적 주종관계
- 공정한 관행에 합치

합리적 출처표시

- 저작권법 제37조
- 서문에서 하는 개괄적 출처표시

  교과서 사건
-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교과서 사건

  “참조” 표시(인용 용례) – 예술철학 사건
- 선행논문 표시로 족한가?

정당한 범위

- **양적 주종 비율 = 인용된 부분 / 표절의혹 저서**

  전쟁사 사건(80%), 교과서 사건(6~20%), 대학본고사 입시문제사건(2.8~9.9%)
- **질적 주종 관계**

  전체 아닌 특정 부분
- **양/질적 주종관계**

  양 주종관계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당범위 벗어남
- **학문의 종별, 저술의 종별 등 고려**

출처표시 – 단위

- 기존 논의와 비판
- 대안 – “문장 단위”
- 부적절한 출처표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부분적/한정적 출처표시

  장/절 별 출처표시

  재인용의 출처표시 문제

  부정확한 인용 용례

  역표절과 제3의 표절

출처표시 방법

모델지침(안) 2. [출처표시의 방법 등]

가. 원칙적으로 출처표시는 문장 단위로 한다.

나. 출처표시·인용의 방법은 학문분야 별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출처표시의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라. 출처표시 의무는 간접인용(“바꿔 쓰기”)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마.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재인용의 문제

- 문제 제기
- 2차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원출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 널리 알려졌어도 끌어다 쓰는 분야에 생소한 경우
  - 2차출처자가 원출처를 가공하고 변형한 경우
- 자기표절, 중복게재와 재인용 문제
- 여전히 남는 딜레마
  - 불확정 개념: 일반적, 학문간 이격정도, 가공 정도
  - 판례에 의한 해결

자기표절 / 중복게재

-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저작권침해와의 관계
  동의(consent) 이론, 피해자론
- 비난가능성에 따른 구분
- 출처표시 문제
- 이종 언어간 번역 발표의 문제점
  2차적 저작물, 학문 성격, 언어간 거리
- 중복제출(학생)

자기표절/중복게재

모델 지침(안) 5. [자기표절.중복게재]

가.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출간함에 있어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 연구물의 존재를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밝혀야 한다.

나.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게재 또는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중복게재

다. 다음에 예시하는 유형은 자기표절.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된 선행 저술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저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저서 또는 논문 형태로 출간하는 행위

(3)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 여러 편을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행위

(4)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편집자의 특정 목적에 따라 다른 저자의 논문과 함께 편집.출간되는 경우

라.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다른 언어로 번역 출간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성격, 사용된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 **박사학위논문 재활용 문제**
  - 학위 수여국의 학문 풍토
  - 논문지도 교수와 공저 논문 / 제자 논문 뺏기 논란
- **학문간 편차**
- **표절판단 시점과 적용규범(Governing Law)**

  문제점 – 마녀사냥

  행위시 규범

  규범 완화시 – 판단시 규범

기타

- **표절 시효 문제**

  시효제도 일반론과 표절

  시효의 기산일 문제

  소급효 논란 – governing law로 해결

- **표절 검증 주체**

  –“공정한 관행” : 관행 판단 주체 / 공정성 담보

  – 검증의 관점

  청중테스트 이론(lay person) / 학술저작물(expert)

  중간/평균적 전문가 관점

정직한 글쓰기

- Manual : Law Review Editors
  Harvard Law School “The Bluebook”
- 문헌정보 / 저작권의 중요성
  Marian Gould Gallagher Law Library
  (국회도서관 / 중앙도서관)
- 글쓰기 : Due Process
- 지식산업 / 문화산업 (Intangible)
  문화의 향상발전 v. 질적 저하/피폐화

감 사 합 니 다.